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224871 손해배상청구
원 고 1. 이○○
2. 진○○
원고들 주소 서울 관악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
담당변호사 최재호
피 고 오○○
인천 남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이향진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53,208,918원, 원고 진○○에게 91,867,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이●●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 등

1) 피고는 2013. 2. 20.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2012. 6.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동거인 이●●의 아버지인 원고 이○○에게 "롯데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하면 10%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롯데카드를 주시면 롯데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이○○으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600,000원을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이○○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3. 2. 20.경 원고 이○○에게 금융상품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낸 원고 이○○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이용하여 동부화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고 이○○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원고 이○○ 명의로 9,910,000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동부화재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이○○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9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7.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합계 20,6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 이○○은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대신 동부화재 등에 대출원금 20,610,000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12. 9.경 원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현대카드는 필요 없어 해지하려고 한다."고 하자, 피고가 대신 해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현대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현대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채 2012. 9. 14.부터 2013. 6. 14.까지 사이에 원고 이○○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556,5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과 함께 거주할 원룸을 구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저렴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농협비씨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2012. 12. 30.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그 중 원고 이○○의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7,173,69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는 2013. 1.경 원고 이○○에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할인

된다고 속여 원고 이○○으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받음 다음 2013. 1. 13.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위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42,19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는 2012. 12.경 원고들에게 "슈퍼마켓 담배대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도와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한다."라고 속인 다음 원고들과 함께 농협은행이 가서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2. 12. 7.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원고 이○○의 농협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13,785,180원을 수령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진○○에 대한 불법행위 등

1) 피고는 2012. 11. 13.경 동거하던 이●●의 어머니인 원고 진○○에게 금융상품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낸 원고 진○○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원고 진○○ 명의로 12,170,000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진○○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 9,9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원고 진○○ 명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금을 교부받는 등 19회에 걸쳐 합계 97,546,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 진○○은 LIG손해보험, 우체국 등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피고 대신 모두 변제하였다(원고 진○○은 위 대출금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대출원금 중 95,356,540원만 청구

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9.경 원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현대카드는 필요 없어 해지하려고 한다."고 하자, 피고가 대신 해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현대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현대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채 2012. 11. 1.부터 2013. 6. 16.까지 사이에 원고 진○○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281,42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이●●과 함께 거주할 원룸을 구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저렴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농협비씨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 9.부터 2013. 6. 6.까지 사이에 원고 진○○의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56,7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는 2012. 11.경 원고들에게 "슈퍼마켓 담배대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도와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어야 한다."라고 속인 다음 원고들과 함께 농협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2012. 11.경 원고 진손복의 KDB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2,416,285원을, 2012. 11. 13.과 같은 해 12. 10.경 원고 진○○의 삼성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8,496,380원과 2,216,760원을, 2012. 11. 13.경 원고 진○○의 우체국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 1,589,650원과 1,972,130원을, 2013. 1. 9.경 원고 진○○의 한화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5,989,395원과 856,466원을, 2013. 1. 21.경 원고 진○○의 한화손해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3,960,000원과 5,192,000원을 각 수령하여 위 합계 32,689,0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2015. 3. 25.경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 이○○의 경우 92,667,657원(= 19,700,000원 + 20,610,000원 + 9,556,590원 + 27,173,697원 + 1,842,190원 + 13,785,180원)이고, 원고 진○○의 경우 136,193,799원(= 95,356,540원 + 6,281,423원 + 1,956,770원 + 2,146,285원 + 8,496,380원 + 2,126,760원 + 1,589,650원 + 1,972,130원 + 5,989,395원 + 856,466원 + 3,960,000원 + 5,192,000원)이며, 여기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이 일부로 지급한 7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 이○○의 경우 64,324,151원[= ① 92,667,657원 - ② 28,343,506원(= 70,000,000원 × 92,667,657원/228,861,456원)]이고, 원고 진○○의 경우 94,537,305원[= ① 136,193,799원 - ② 41,656,494원(= 70,000,000원 × 136,193,799원 / 228,861,456원)]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이○○에게 53,208,918원, 원고 진○○에게 91,867,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